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을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변인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법제조정법제관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정원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8.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법제교육과장 및 법제관”을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2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11.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12.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리
13.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4. 훈령·예규 등의 사전·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5.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
16.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관리

17.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운영

제11조제2항 중 “6명(5급 5명, 6급 1명)”을 “9명(5급 8명, 6급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조정법제관 1개 직위

별표 1 중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하고, 서기관 “27”을 “2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84”를 “85”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17”로 한다.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하고, 서기관 “27”을 “2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84”를 “85”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17”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법제정책국) ① (생 략)	제6조(법제정책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 ----- -----.
<신 설>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③ ~ ⑦ (생 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9조(법제지원국) ① (생 략)	제9조(법제지원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국장 밑에 법제관 1명을 둔 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 지원과장,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장, 법제교육과장 및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 고, 알기쉬운법령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장 및 법제교육과장----- ----- -----.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	⑤ -----

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2. (생략)

⑥ ~ ⑨ (생략)

⑩ 제2항에 따른 법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

1. ~ 10. (현행과 같음)

11.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12.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 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리

13.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4. 훈령·예규 등의 사전·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5.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

16.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관리

17.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운영

18. (현행 제12호와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삭제>

1의2. 훈령·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관리

2.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3. 훈령·예규 등의 사전·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4. 훈령·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관리

5.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관리

6. 훈령·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운영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5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9명(5급 8명, 6급 1명)-----

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u>대변인</u> 2. 3.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u>법제조정법제관 1개 직위</u> 2. 3.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u>13</u>	<u>14</u>	+1
•	•	•	
•	•	•	
서기관	<u>27</u>	<u>26</u>	-1
•	•	•	
•	•	•	
행정사무관	<u>84</u>	<u>85</u>	+1
•	•	•	
행정주사	<u>18</u>	<u>17</u>	-1
•	•	•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u>13</u>	<u>14</u>	+1
•	•	•	
•	•	•	
서기관	<u>27</u>	<u>26</u>	-1
•	•	•	
•	•	•	
행정사무관	<u>84</u>	<u>85</u>	+1
•	•	•	
행정주사	<u>18</u>	<u>17</u>	-1
•	•	•	
•	•	•	